2025년 제13차 정기 대의원 총회 자료집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저녁 7시
장소 :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대회의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협동조합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선언문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을 선언합니다.”

● 현대 사회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 대량 생산과 소비체제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과다한 이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핵에너지의 위험성은 인류의 안전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인천은 화력발전의 도시로서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를 수도권의 다른 도시에 보내고 그 과정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의 몫이 됐다.

● 이에 우리는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의 첫 걸음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기존 에너지 생산과 소비체계를 바꾸고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드는 것에 다다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각오와 비전을 선언하며 엄중히 실천해 나갈 것을 밝힌다.

첫째.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의 손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산해나간다.
자연으로부터 무한히 주어지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확대는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다. 본 협동조합은 인천시민 조합원의 힘을 모아 공공시설, 기업 등의 옥상을 비롯한 유휴공간에 햇빛발전소를 적극 설립해 나간다.

둘째,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의 활동과 사업은 에너지 생산과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저소득,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 에너지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천의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협동, 나눔의 기본가치를 구현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운동의 선두임을 자임하며 협동조합으로서의 근본적 가치와 정의, 덕목을 존중하며 조합원에 의한 협동과 나눔, 돌봄의 가치를 꿋꿋이 지켜나갈 것이다.

이상, 우리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민주적·공동체적 협동조합 가치들을 구현함으로써 인천사회가 보다 인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2013년 1월 18일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 연혁

2013년	2월 14일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 2월 18일 초대 이사장 심형진 취임 인천환경대상 우수상 시상
2014년	우수협동조합 인천광역시장상 수상 1호기 주안도서관 태양광발전소 준공
2015년	2호기 강화마니산친환경영농조합태양광발전소 준공
2016년	협동조합 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19년	3월 20일 2대 이사장 정세일 취임
2020년	우수협동조합 인천광역시장상 수상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
2022년	3호기 만수여중 햇빛발전소 준공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출범
2023년	4호기 남동경기장 시민햇빛발전소 준공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입
2024년	5호기 인천석정초등학교 시민햇빛발전소 준공
2025년	6호기 김진선시민햇빛발전소 양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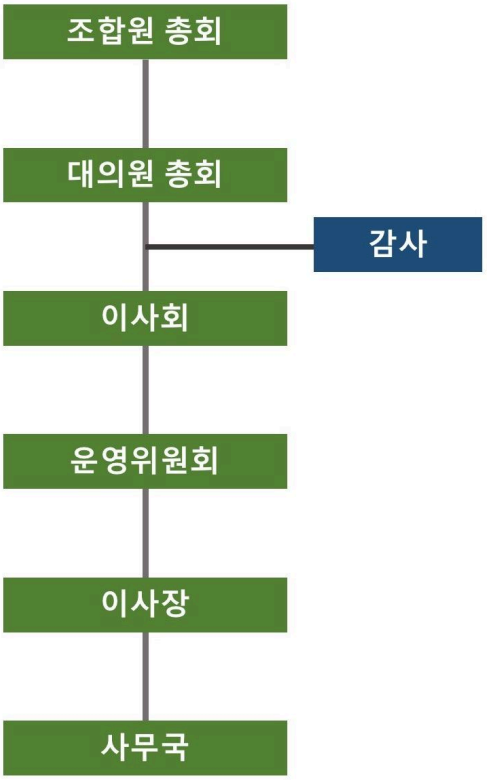
조합원 총회
대의원 총회
감사
이사회
운영위원회
이사장
사무국

조합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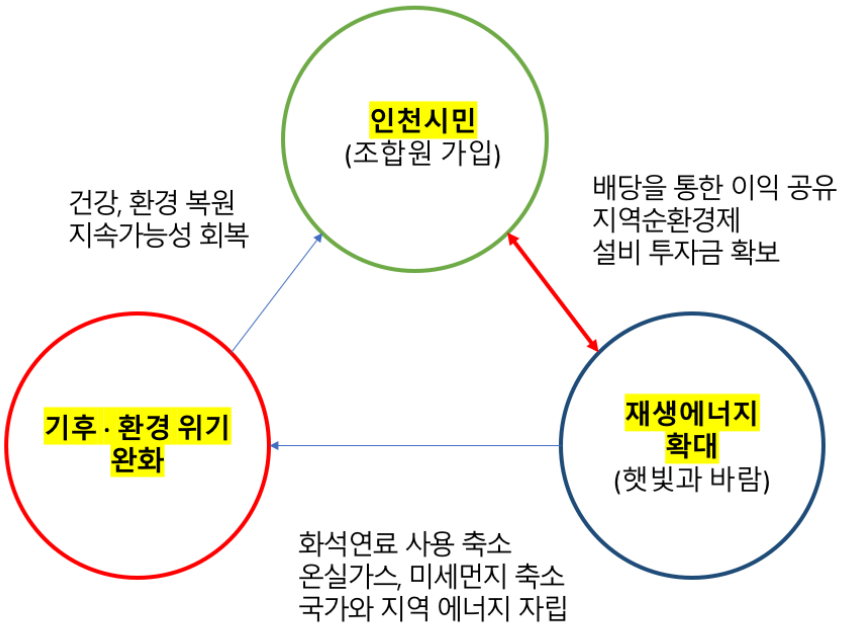
인천시민
(조합원 가입)
건강, 환경 복원
지속가능성 회복
배당을 통한 이익 공유
지역순환경제
설비 투자금 확보
기후 · 환경 위기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햇빛과 바람)
화석연료 사용 축소
온실가스, 미세먼지 축소
국가와 지역 에너지 자립

순서

18:30 접수

19:00

1. 이사장 환영사 6쪽
2. 우수조합원 시상 7쪽
3. 성원 보고 7쪽
4. 개최 선언 7쪽
5. 회순 채택 7쪽
6. 서기,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7쪽
7. 안건 상정 7쪽
8. 안건 토의

제1호 의안 전차회의록 승인 건	8쪽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 및 회계 감사 보고 건	10쪽
제3호 의안 2024년 사업 및 결산 보고서 승인 건 (출자금 반환, 이익잉여금 처분안 포함)	13쪽
제5호 의안 임원 선거	36쪽
제6호 의안 2025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차입금 최고한도액 포함)	38쪽

9. 퇴임 임원 감사패 전달 42쪽

이사장 : 정세일
이 사 : 서일석, 심형진, 이완기
감 사 : 조현행

10. 폐회 선언 43쪽
11. 기념 촬영 43쪽

* 정관 및 규정 첨부 44쪽

1. 이사장 환영사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총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기후위기 시대에 다섯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조합원에게 배당은 물론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개인이 건설한 작은 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우리 조합의 여섯번째 발전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전소 인수는 조합과 개인이 발전소를 공동 운영하는 사업 모델 개발함으로써 개인 혹은 조합과의 공동으로 소자본의 소규모 발전소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새로운 사업영역에 한 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조합원님과 대의원님의 성원과 이사님 그리고 사무국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의 성원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우리의 활동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적극적 활동도 부족했고 발전소 부지를 좀 더 확보하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기조도 변화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총회는 우리 조합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와 함께 더욱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빛과 바람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인천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총회 이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의원님들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정세일

2. 우수조합원 시상

1등 : 신규 조합원 6명 추천	2등 : 신규 조합원 4명 추천	3등 : 신규 조합원 2명 추천
이 훈	김태인 송연숙 심형진 이의순 정세일	김기숙 금혜진

3. 성원 보고

4. 개회 선언

5. 회순 채택

6. 서기, 의사록 날인인 선임

7. 안건 상정

8. 안건 토의

제1호 의안 전차회의록 승인

2024년 제12차 정기 대의원총회 의사록

- 일시: 2024년 3월 11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대회의실

- 사회 : 이훈 사무국장
- 의장 : 정세일 이사장

1.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사무국장이 대의원 51명 중 2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2. 회순채택

전원 찬성하여 회순을 원안대로 채택하다.

3. 서기,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이완기 이사를 서기로, 의사록 서명 날인인으로 김종임, 명철수, 박옥희 대의원을 지명하다. 전원 찬성하다.

4. 안건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상정하는 것에 전원 찬성하다.

5. 안건 토의

제1호 의안 전차 회의록 승인
- 이훈 사무국장이 의사록(5~7쪽)을 보고하다.
-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2호 의안 2023년 감사보고서(사업 및 회계) 승인
- 이훈 사무국장이 사업 감사 보고서(8쪽), 회계감사보고서(9쪽)를 감사 대신하여 보고하다.
- 전원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호 의안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서 승인(출자금 환급안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포함)

- 이훈 사무국장이 총회 자료(10~18쪽)를 바탕으로 사업 보고를 하다.
- 김태인 대의원이 발전량이 감소된 것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발전소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해 문의하다. 이완기 이사가 하자 보수 기간은 5년이며 주안도서관 발전소와 마니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발전소는 10년 가까이 되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고 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재작년 대비 일사량이 감소하는 것, 재개발 아파트 건설, 항공유로 추정되는 기름으로 인한 모듈 표면 오염 등의 이유를 설명하다.
- 권순실 대의원이 마니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의 계약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이후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다. 정세일 이사장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과 철거, 양도 등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전원 동의로 사업보고 원안대로 승인하다.

- 이훈 사무국장이 총회 자료집(19~22쪽)을 바탕으로 결산 보고를 하다.
- 명철수 대의원이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문의하다. 정세일 이사장이 작년 남동경기장 발전소 건설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하다.
- 김진선 대의원이 대출이자 지출이 많은데 저리의 타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문의하다. 정세일 이사장이 공유재산을 임대해 발전사업을 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의 경우 현재는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고 설명하다.
- 전원 동의로 결산보고 원안대로 승인하다.

- 이훈 사무국장이 출자금 환급안(23쪽)에 대해 설명하다.
- 김종임 대의원의 재청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 이훈 사무국장이 이익잉여금 처분안(24쪽)에 대해 설명하다. 정세일 이사장이 배당을 출자금의 6%로 이사회에서 안으로 제시했다고 추가 설명하다.
- 김광수 대의원의 재청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4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차입금 최고한도액 포함)

- 이훈 사무국장이 총회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25~26쪽), 예산안(27~28쪽), 차입금 최고한도액 안(28쪽)을 보고하다.
- 김광수 대의원이 사업계획에서 관련근거 명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정세일 이사장이 앞으로 관련근거를 명시하겠다고 설명하다.
- 박옥희 대의원의 재청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6. 우수조합원 선물 전달

- 2023년 3명이상 조합원 가입을 추천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우수 조합원 선물을 전달하다.

• 대상 : 명철수, 문지혜, 송연숙, 이완기, 이종범, 최정희 (총6명, 정세일 이사장 제외)

7. 폐회 선언

이사장이 폐회 선언을 하다.

2024년 3월 11일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의장 이사장 정세일 (인)

조합원 김종임 (인)

조합원 명철수 (인)

조합원 박옥희 (인)

제2호 의안 2024년 감사보고서(사업 및 회계) 승인

2-1. 2024년 사업감사 보고

감 사 보 고 서

본 감사는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 등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13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합니다.

감 사 개 요

1. 감사 일시 : 2025. 2. 26. ~ 3. 4.
2. 감사 장소 : 감사 사무실
3. 감사 범위 : 전 사업연도인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정관에 따른 조합 사업
4. 감사 자료 : 2024년도 사업보고서 등 조합 제출 자료

감 사 의 견

2024년도에 우리 조합은 제6기 이사회 2년차를 맞아 한 해 동안 협동조합 7대 원칙 및 창립선언문 취지에 부합하게 ① 5호기 인천석정초 발전소 준공과 6호기 양수 추진 등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통하여 총 매출 2억 3천여 만 원을 기록하고, ② 3회에 걸친 조합원 교육과 3차례의 홍보부스 운영, ③ 햇빛장학금 지급과 생태전환교육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과 연대 사업을 수행하는 등 조합사업 발전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조합의 2024년도 사업은 협동조합법, 조합 정관 및 각 규약에 부합한 적법하고 적정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2025. 3. 4.

감사 변호사 한 필 운

2-2. 2024년 회계감사 보고

회계감사보고서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51조에 의거 2024년도 회계관련 서류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감사 대상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감사 대상범위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회계기록일체
- 감사 실시기간 : 2025년 2월 25일
- 감사 실시장소 : 세무법인 이든 사무실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감사 조 현 행

제3호 의안 2024년 사업 및 결산 보고서 승인 (출자금 환급안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포함)

3-1. 2024년 사업 보고

<2024년 사업 기조>

- 민주적인 소통과 자발적인 참여로 조합의 확장

<목표>

- 새 발전소 2개 건설
- 조합원 600명 달성
- 조합원 교육 및 소통 강화

(1) 조합 현황

①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기준	2024.12.31	2023.12.31
조합원수	**538명** - 가입 30명 - 탈퇴 3명	**512명** -가입 43명 -탈퇴 7명
출자금	**390,600,000원**	**319,600,000원**

② 분석 및 평가

- 2023년 대비 조합원 수는 27명 증가, 출자금은 71,000,000원 증가
- 조합원수는 27명 증가했으나 목표 600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목표 달성률 약 89%.

(2) 제6기 이사회 2년차(2024년) 활동 현황

① 이사회 현황

- 이사회 총원 : 11명(평균 출석률 : 70%)
- 회차 : 6회(5회 회의, 1회 간담회)

② 이사회 활동 현황

1) 6차 회의

- 일시 / 장소 : 2024. 4. 25.(목) 17:00 /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 참석 : 정세일, 최정희, 김용래, 김종임, 명철수, 박영대, 심형진, 이완기 (이상 8인)
- 주요 내용

- 김진선대의원 햇빛발전소 현물출자 건
- 신입조합원 교육 건
- 주안도서관 기후, 생태, 환경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건

2) 7차 회의

- 일시 / 장소 : 2024. 7. 12.(목) 17:00 /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 참석 : 정세일, 이세영, 최정희, 김용래, 김종임, 박옥희, 박영대, 서일석 (이상 8인)
- 주요 내용
  - 김진선대의원 햇빛발전소 현물출자 건
  - 리플렛 제작 건
  - 2024년 하반기 사업 계획 건

3) 8차 회의

- 일시 / 장소 : 2024. 9. 27.(목) 17:30 /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 참석 : 정세일, 이세영, 김용래, 김종임, 서일석(이상 5인)
- 주요 내용
  - 햇빛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참여 건
  - 11월 조합원 교육 및 견학 건

4) 9차 회의

- 일시 / 장소 : 2024. 12. 19.(목) 17: 30/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 참석 : 정세일, 이세영, 김용래, 김종임, 박옥희, 박영대, 서일석 (이상 7인)
- 주요 내용
  - 2025년 총회 및 임원 선거 준비 건
  - 전국연합회 회비 조정 건
  -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비상행동 활동비 지원 건

5) 10차 회의

- 일시 / 장소 : 2025. 2. 28.(금) 17:30 /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 참석 : 정세일, 최정희, 김종임, 명철수, 박영대, 박옥희, 서일석(이상 7인)
- 주요 내용
  - 총회 및 임원선거 준비 사항 점검의 건
  - 김진선시민햇빛발전소 보고

(3) 발전소 사업 현황

① 발전소 운영 현황

1) 1호 주안도서관 발전소 (98.82kW) 연간 현황(계약기간 : 2028년 12월 1일)

구분	2024년	전년 대비
발전량	**124,630kWh**	△ 1,666kWh
REC 발급량	**187개**	△ 3개
전력매출	**15,981,788원**	▽ 4,895,209원
REC매출	**22,440,000원**	△ 360,000원
총매출	**38,421,788원**	▽ 4,535,209원

2) 2호 마니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발전소 (50kW) 연간 현황 (계약기간 : 2025년 7월 15일)

구분	2024년	전년 대비
발전량	**54,760kWh**	△ 7,536kWh
REC 발급량	**82개**	△ 12개
전력매출	**7,055,338원**	▽1,099,407원
REC매출	**5,684,167원**	△2,956,989원
총매출	**12,739,505원**	△1,588,764원
- 2025년 7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철거 협의		

3) 3호 만수여자중학교 발전소 (74.88kW) 연간 현황(계약기간 : 2031년 12월 31일)

구분	2024년	전년 대비
발전량	**84,658kWh**	▽425kWh
REC 발급량	**102개**	증감 없음
전력매출	**10,889,847원**	▽3,454,508원
REC매출	**3,869,200원**	△2,011,326원
총매출	**14,759,047원**	▽1,443,181원

4) 4호 남동경기장 발전소 (467.5kW) 연간 현황 (계약기간 : 2032년 9월 30일)

구분	2024년	전년 대비
발전량	**646,179kWh**	△ 72,996kWh
REC 발급량	**969개**	△ 112개 증가
전력매출	**83,156,318원**	▽ 7,851,393원
REC매출	**70,211,100원**	△ 4,021,500원
총매출	**153,367,418원**	▽ 3,829,893원

5) 5호 인천석정초 발전소 (55.35kW) 연간 현황(계약기간 : 2034년 12월 31일)

구분	2024년	전년 대비
발전량	**53,336kWh**	없음(4월 상업 운전 개시)
REC 발급량	**64개**	없음(4월 상업 운전 개시)
전력매출	**6,840,046원**	없음(4월 상업 운전 개시)
REC매출	**4,510,500원**	없음(4월 상업 운전 개시)
총매출	**11,350,546원**	없음(4월 상업 운전 개시)

② 발전소 운영 분석 및 평가

1) 연간 합계

구분	2024년	전년 대비
총 설비용량	746.55kW	△ 55.35kW
발전량	963,563kWh	△ 135,109kWh
REC발급량	1,404개	△ 191개
전력매출	123,923,337원	▽ 10,460,471원
REC매출	106,714,967원	△ 13,591,498원
총 매출	230,638,304원	△ 3,131,027원

2) 발전 사업 평가

(a) 2024년 연간 평균 SMP 128.33원(전년 대비 38.67원 감소)으로 전력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LNG가격과 전력수요급감이 원인이다.

(b) 325가구 전력 사용량 (2022년 인천 가구당 평균 전력소비량 2,968kWh/년)

(c) 온실가스 424.25톤 감축 (2022년 발전부문 탄소배출계수 0.4434 tCO_2/MWh)

(d) 소나무 64,281그루 효과 (30년생 소나무 6.6kg/그루/년 흡수)

<참고자료> 평균 SMP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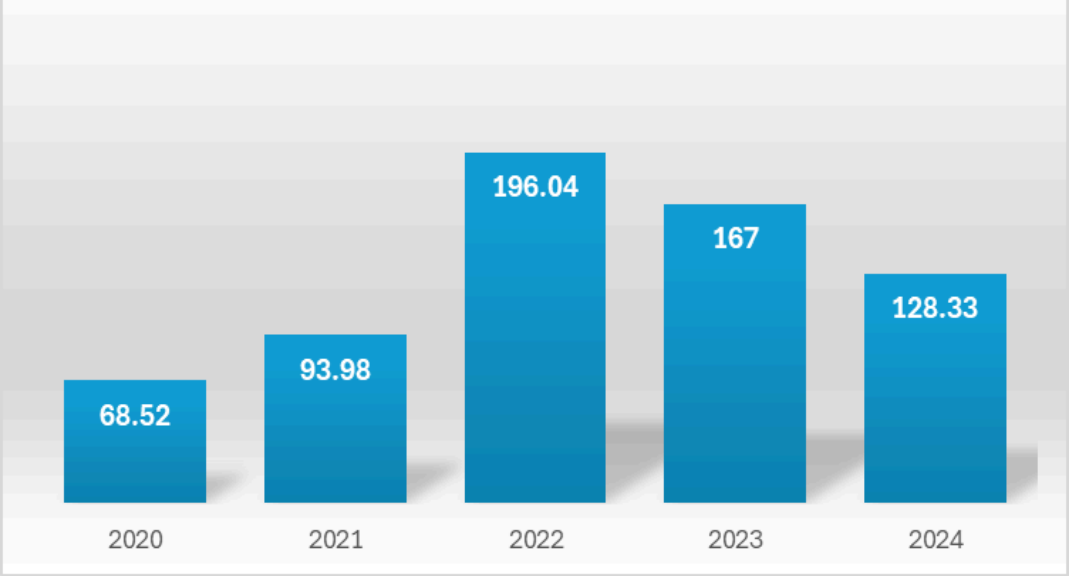

<정보 출처 : 전력거래소>

(4) 발전 사업 추친 현황

① 부개도서관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추진 : 대화를 나누었으나 부정적이어서 진행하지 못함

② 김태인 조합원 소개로 은광교회 옥상 발전소 설치 추진 : 은광교회와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함

③ 인천교통공사 신사업팀의 의뢰로 계양역 주차장, 귤현역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추진 : 미팅도 하고 긍정인 반응을 보였으나 팀장 교체 이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④ 에너지산업과와 함께 경인선철도부근 태양광발전소 설치 추진 : 경인선 지하화 구역이라 진행하지 않음.

⑤ 에너지산업과 미팅 : 주차장태양광설치 의무화 법 국회에서 추진 중. 내년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에서 법 개정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 조율

⑥ 인천 YWCA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안산시민발전협동조합으로부터 건물지원사업 영업비를 받음

(5) 새발전소 - 6호기 김진선시민햇빛발전소

① 발전소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82, 옥상
설비 용량	15kW
양도양수비	현금 850만원, 현물출자 950만원, 합계 1,800만원
예상 발전량(연간)	약 191,625kWh
예상 매출(연간)	약 2,400,000원(SMP 128원으로 계산)

② 설치과정

- 김진선대의원 개인발전소 양도양수 제안
- 2024.4.25 - 이사회에서 양도양수안 검토
- 2024.11.5 - 양도양수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2024.12.20 - 발전사업허가증 발급
- 2025.1.31 - 사업용 PPA 계약
- 2025.2.26 - 양도양수비 지급
- REC 판매를 위한 시설 인증서 발급
- 조합의 6호 발전소로 운영(2025년 1월부터)

(6). 배당 지급 (출자금의 6%)

① 총 지급액 : 14,783,136원 / 405명

② 배당 누적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	-	7%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	7%	7%	5%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	6%		

(7) 조합원 교육 및 홍보 활동

① 협동조합 회계 교육

- 일시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장소 :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 나눔과더함 2층 대회의실
- 내용 : 협동조합 실무 담당자를 위한 회계 기초 교육
- 강사 : 조현행 세무사
- 참여 : 26명 신청, 17명 수강

<table>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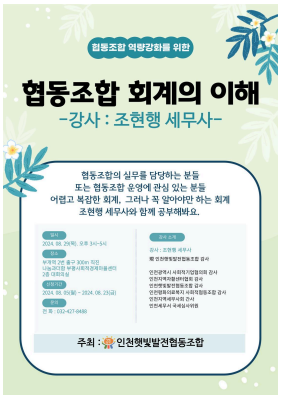
</td>
<td>
</td>
</tr>
</table>

② 신입조합원 교육

- 일시 : 2024년 9월 25~26일, 오후 6시 30분~8시, 총 2회
- 장소 :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지관 320호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 커뮤니티홀
- 내용 : 1차 햇빛발전과 협동조합 / 2차 햇빛발전과 기후위기
- 강사 : 1차 심형진 이사 / 2차 최정희 부이사장
- 참여 : 1차 18명 신청, 12명 수강 / 2차 11명 신청, 4명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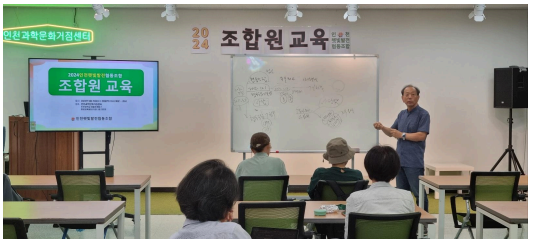

③ 햇빛발전 홍보 부스 운영 (3회 운영, 참여 조합원 : 정태명, 서미경)

1) 4월 20일 토요일 10:20~14:30 “제54회 지구의 날 행사”

2) 6월 5일 수요일 11:00 ~ 16:00 “2024 환경의 날 시민 환경한마당”

3) 9월 7일 토요일 11:00~18:00 “굴포천천히”

(8) 지역 사회 공헌 사업

① 햇빛장학금 지원

학교	총 장학금	수혜자	비고
만수여자중학교	500,000원	1학년 2명, 2학년 3명	장학금 수여식
인천석정초등학교	300,000원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도 함께 기부

② 만수여자중학교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자유학기제 수업

- 참여조합원(역할: 강사) : 김종임, 김종금
- 16차시 수업 연 2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업비 90% 지원 (생태전환교육 지원사업)

③ 만수여자중학교 기후환경동아리 MEGA(Mansu Eco Guard Action) 운영 지원

- 참여조합원(역할: 활동코치): 이훈
- 3회 / 2시간, 수업 주제 : 인문학으로 본 기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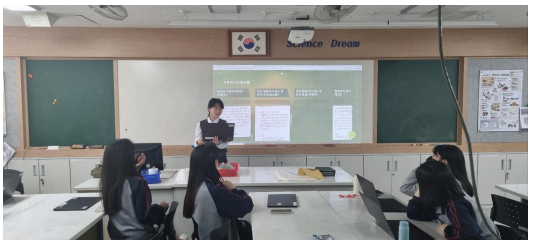

④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생태전환교육

구분	자유학기제 (중등)	찾아가는 기후학교 (초등/중등)
학교수	4개 학교 4개 학급	12학교 45학급
학생수	110명	987명
강사	4명(김종임, 김종금, 신선희, 최영주)	3명(김종임, 김종금, 최영주)
프로그램 이름	기후랑 햇빛에너지, 너희 무슨 사이니?	1~2학년 “우리는 햇빛탐험대” 3~4학년 “햇빛에너지로 무한 리필해요.” 5~6학년 “햇빛은 쨍쨍~ 에너지는 찌릿찌릿”
교육목표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중립 실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기후위기, 햇빛에너지에 대한 이해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햇빛에너지, 햇빛발전소에 대한 이해
성과	1회: 기후이야기 들어볼래요? -기후위기로 인해 훼손된 지구 생태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환경 만화편지를 제작, 영상 발표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구생태계 지속가능을 위한 실천행동을 고취시키는 수업이 되었다 2회: 여기는 햇빛 놀이터!! -미래의 대안 에너지인 햇빛에너지의 활용에 대해 폐아이스컵 태양광 LED등과 태양열 조리기 만들기와 실험으로 햇빛이 가진 태양광과 태양열, 두 가지 에너지 원리를 학생들이 직접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1~2학년의 경우, “환경그림책 만들기”, “환경보드게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탑쌓기”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3~4학년의 경우, 탄소중립실천방법이 써 있는 보드판에 실천방법을 외치며 탑을 하나 하나 쌓아가는 게임을 통해 수업에 즐거움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효과가 있었으며, 햇빛발전키트를 활용하여 햇빛으로 전기를 발전시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체험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의 에너지가 아닌 햇빛으로 만드는 재생에너지의 활용방법을 탐구하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익힐 수 있었다. 5~6학년의 경우,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햇빛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table>
<tr><td></td><td>3회: 탄소중립마을 프로젝트 01

친환경 마을인 탄소중립 마을을 디오라마로 만들어 보며 탄소중립 마을의 구성 요인들을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4회: 탄소중립마을 프로젝트 02

디오라마로 만들어진 탄소중립 마을을 학생들이 기자가 되어 탐방 환경신문 형식으로 모둠 발표하여 친환경 탄소중립 마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수업이 되었다</td><td>사용하는 태양열조리기를 만들어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활용해 보는 체험활동을 통해 햇빛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배우게 되며, 인천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발전소를 건설해 보는 보드게임으로 친환경발전소의 중요성과 에너지원의 활용방법을 이해하게 되는 수업이 되었다.</td></tr>
<tr><td>활동사진</td><td>
 </td><td>
 </td></tr>
</table>

⑤ 주안도서관 재생에너지교육

- 참여조합원(역할 : 강사) : 최정희
- 주안도서관의 요청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 2회 수업 : 6월 17일, 24일

(9) 연대 사업

①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 12월 13일 금요일 16:00~17:00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과 및 인천시 각 군구 에너지정책 담당자와 간담회

②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기획단 회의 : 10회 참여
- 3월 15일 : 기후시민이 기다리는 2024총선 토론회
- 3월 23일 : 기후유권자대회
- 7월 11일 :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가동 20년 조기 폐쇄 기자회견
- 9월 3일 : 907 기후정의행진 출정식 및 기자회견
- 9월 7일 : 907 기후정의행진
- 11월 29일 : 영흥화력발전소 2호기 가동 20년 조기폐쇄 기자회견
- 11월 30일 : 기후에너지 정책 평가와 2026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준비 모임
- 9월 7일 : 기후정의행진 사진

③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 6월 13일 :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참여

- 9월 12일 : 시민발전협동조합비상행동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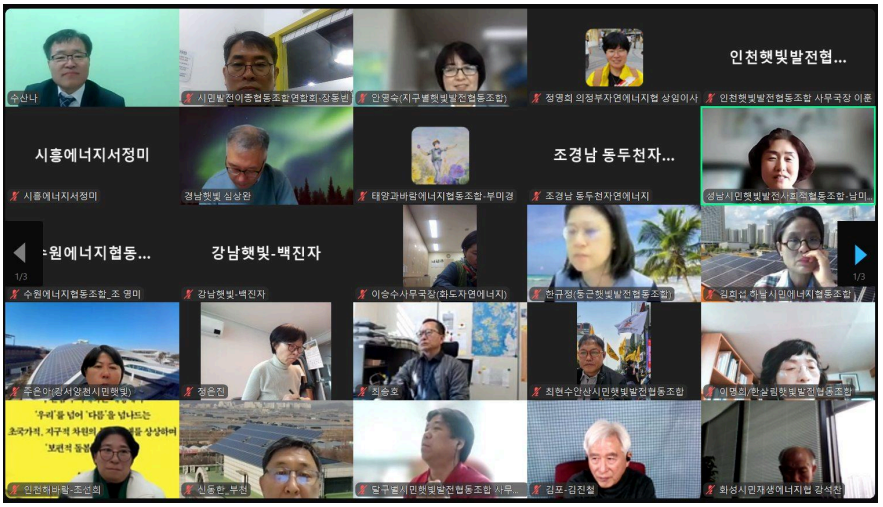

- 10월 31일 : 국회소통관에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의무화 법안 기자회견

- 우선접속 의무화 법안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 시작 및 홍보팀 활동 : 카드뉴스, 재촉송 제작 참여

<재촉해요 카드뉴스 2탄>

<재촉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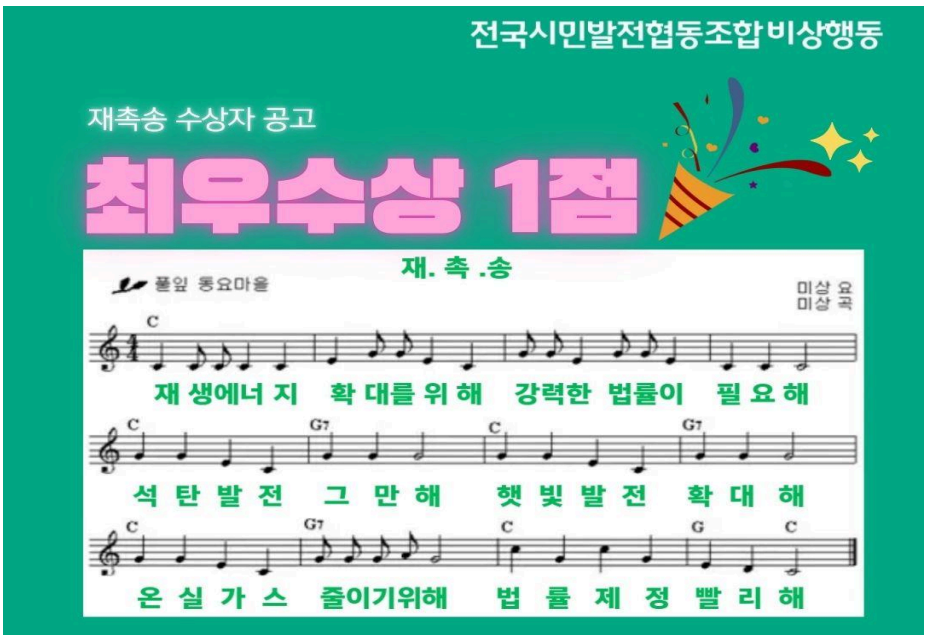

④ 탄소중립마을넘어협동조합의 남동경기장 견학 안내
- 일시 : 2024년 6월 21일
- 장소 : 남동경기장 시민햇빛발전소

⑤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탐방 안내
- 일시 : 2024년 12월 17일
- 장소 : 만수여중 태양광발전소, 남동경기장 시민햇빛발전소

(9) 대외 활동

①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 활동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회의 장소 : 인천지속협 일시 : 2024년 5월 17일 16:00~17:30 주제 : 경제분과 2024년 사업 선정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회의 장소 : 인천지속협 일시 : 2024년 6월 20일 16:00~18:00 주제 : 경제분과 2024년 사업 계획 짜기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소위 회의 장소 : 사월칠일카페 일시 : 2024년 7월 9일 15:00~16:00 주제 : 경제분과 소위 활동 계획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회의 장소 : 사월칠일카페 일시 : 2024년 7월 18일 16:00~18:00 주제 : 간담회 준비 확인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소위 회의 장소 : 인천지속협 일시 : 2024년 8월 21일 15:00~18:00 주제 : 정의로운 전환 운동과 과제 간담회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회의 장소 : 인천지속협 일시 : 2024년 8월 22일 16:00~18:00 주제 : 2025년도 사업 계획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소위 회의 장소 : 인천지속협 일시 : 2024년 9월 11일 15:00~18:00 주제 : 정의로운 전환 운동과 과제 간담회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회의 장소 : 인천지속협 일시 : 2024년 11월 21일 16:00~18:00 주제 : 각 분과별 포럼 및 토론회 점검
인천지속협 경제분과 주최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장소 : 인천지속협 일시 : 2024년 12월 11일

② 인천환경운동연합 연대 활동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전환 인천시민 간담회 장소 : 인천 지속협 일시 : 2024년 6월 12일 15:00 주제 : 영흥화력발전소 암모니아 수소 전환 가능성(기후솔루션 정석환 연구원 기조 강연)
플라스틱협정체결 지지 행동(부산) 장소 : 부산 벡스코 일시 : 2024년 11월 23일~24일
환경운동연합 30주년 기념 행사 참여 장소 :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성지관 2층 일시 : 2024년 12월 4일

③ 기타 활동

YWCA 태양광발전소 준공식 장소 : 인천YWCA 일시 : 2024년 4월 22일 오전 11시 정세일 이사장 축하말
계양구 재생에너지 확대 실천토론회 장소 : 계양구 의회 일시 : 2024년 5월 17일 13:30~14:30 주제 : 계양구 주차장 태양광발전 설치 문제
사회적경제 조직역량강화교육 1차 장소 : 나눔과더함 2층 대회의실 일시 : 2024년 6월 26일 13:30~15:30 주제 : 사회적경제의 역사, 사회적경제 제안, ESG경영 인천시 조례안 제정건
작은 선택, 큰 변화. 1.5℃ 라이프스타일로 사회를 바꾸는 방법 장소 : 창비 서교빌딩 일시 : 2024년 7월 2일 14:00~16:00
부평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장소 : 부평아트센터 일시 : 2024년 7월 11일 13:30~18:00 주관 : 부평구, 부사협, 쿱비즈협동조합 참여 : 정세일 이사장, 이훈 사무국장
2024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토론회 장소 : 줌 일시 : 2024년 8월 6일 14:00~16:00 주제 :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 미래를 말하다

3-2. 2024년 결산 보고

재 무 상 태 표

제 12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03,507,181		127,165,496
(1) 당 좌 자 산		103,507,181		127,165,496
보 통 예 금		85,683,286		103,750,853
외 상 매 출 금		16		4,090,671
미 수 금		4,280,000		2,560,000
선 급 금		2,478,104		2,478,104
선 급 비 용		10,166,185		13,476,108
선 납 세 금		899,590		809,760
(2) 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1,050,009,810		1,020,687,117
(1) 투 자 자 산		700,000		3,700,000
출 자 금		700,000		3,700,000
(2) 유 형 자 산		1,049,309,810		1,016,987,117
건 설 중 인 자 산		0		40,839,000
시 설 설 치 비	1,417,057,545		1,269,821,27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67,747,735	1,049,309,810	293,673,160	976,148,117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0
자 산 총 계		1,153,516,991		1,147,852,613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2,563,374		74,771,880
미 지 급 금		2,061,840		47,275,756
예 수 금		1,245,140		2,193,630
부 가 세 예 수 금		2,472,834		10,403,242
선 수 금		1,300,000		10,960,000
미 지 급 배 당 금		5,483,560		3,939,252
Ⅱ. 비 유 동 부 채		637,737,844		684,230,000
장 기 차 입 금		637,737,844		684,230,000
부 채 총 계		650,301,218		759,001,880
자 본				
Ⅰ. 자 본 금		390,600,000		319,600,000
자 본 금		390,600,000		319,6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112,615,773		69,250,733
이 익 준 비 금		24,734,301		22,351,811
사 업 확 장 적 립 금		22,207,120		23,074,020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65,674,352		23,824,902

재 무 상 태 표

제 12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1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2(당)기 금 액		제11(전)기 금 액	
(당 기 순 이 익)				
당기 : 65,597,630 원				
전기 : 22,301,037 원				
자 본 총 계		503,215,773		388,850,73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53,516,991		1,147,852,613

손 익 계 산 서

제 12(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1(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274,076,087		251,380,401
전 력 비 매 출	274,076,087		217,016,764	
교 육 매 출	0		34,363,637	
Ⅱ. 매 출 원 가		116,482,367		100,795,262
제 품 매 출 원 가		116,482,367		100,795,262
기 초 제 품 재 고 액	0		0	
당 기 제 품 제조원가	116,482,367		100,795,262	
기 말 제 품 재 고 액	0		0	
Ⅲ. 매 출 총 이 익		157,593,720		150,585,139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56,747,181		93,700,139
직 원 급 여	28,500,000		25,087,740	
퇴 직 급 여	0		1,794,085	
복 리 후 생 비	6,220,760		5,911,361	
여 비 교 통 비	669,000		1,861,703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198,000		286,800	
통 신 비	948,077		850,550	
세 금 과 공 과 금	1,099,800		1,683,990	
지 급 임 차 료	7,843,783		180,000	
보 험 료	251,450		333,220	
운 반 비	172,510		120,820	
도 서 인 쇄 비	868,385		494,138	
소 모 품 비	132,410		215,200	
지 급 수 수 료	2,177,534		3,527,930	
홍 보 교 육 사 업 비	3,193,472		2,157,802	
업 무 추 진 비	482,000		4,813,000	
연 대 활 동 비	390,000		470,000	
지 역 사 회 기 금 비	0		38,018,000	
임 원 활 동 비	3,600,000		5,893,800	
Ⅴ. 영 업 이 익		100,846,539		56,885,000
Ⅵ. 영 업 외 수 익		176,835		3,574,659
이 자 수 익	176,754		135,812	
후 원 금	0		3,338,824	
잡 이 익	81		100,023	
Ⅶ. 영 업 외 비 용		33,409,714		36,364,592
이 자 비 용	33,409,667		36,364,558	

손 익 계 산 서

제 12(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1(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잡 손 실	47		34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67,613,660		24,095,067
IX. 법 인 세 등		2,016,030		1,794,030
법 인 세 등	2,016,030		1,794,030	
X. 당 기 순 이 익		65,597,630		22,301,037

제조원가명세서

제12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1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12(당)기		제11(전)기	
	금 액		금 액	
Ⅰ.원 재 료 비		2,469,015		0
기 초 원 재 료 재고액	0		0	
당 기 원 재 료 매입액	2,469,015		0	
기 말 원 재 료 재고액	0		0	
Ⅱ.노 무 비		0		0
Ⅲ.경 비		114,013,352		100,795,262
통 신 비	537,612		417,612	
전 력 비	1,886,525		1,454,979	
감 가 상 각 비	74,074,575		66,478,183	
지 급 임 차 료	19,802,217		20,487,733	
수 선 비	4,404,100		870,500	
보 험 료	4,705,250		4,024,200	
소 모 품 비	34,273		137,800	
지 급 수 수 료	8,568,800		6,924,255	
Ⅳ.당 기 총 제 조 비 용		116,482,367		100,795,262
Ⅴ.기 초 재 공 품 재고액		0		0
Ⅵ.타 계 정 에 서 대체액		0		0
Ⅶ.합 계		116,482,367		100,795,262
Ⅷ.기 말 재 공 품 재고액		0		0
IX.타 계 정 으 로 대체액		0		0
X.당 기 제 품 제 조원가		116,482,367		100,795,262

3-3. 출자금 환급안

신청일	환급금	이름	사유
2024년 9월 5일	1,500,000원	서**	개인 사정
2024년 12월 17일	20,000,000원	유**	개인 사정
2024년 12월 30일	100,000원	윤**	개인 사정
계	21,600,000원		

<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8의2항에 의거하여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4. 2024년 이익잉여금 처분안

(1) 이익잉여금 현황

항목	2024.12.31(12기)	2023.12.31(11기)
이익잉여금	**112,615,773**	**69,250,733**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	24,734,301	22,351,811
사업확장적립금	22,207,120	23,074,020
미처분이익잉여금	**65,674,352**	**23,824,902**

(2)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안

① 당기기미처분이익잉여금

항목	금액	비고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76,722	
당기발생잉여금	65,597,630	
합계	65,674,352	

②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안

항목		금액	비고
법정적립금(이익잉여금의 10%)		6,567,435	회계연도 기준 총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 의무
임의 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20,000,000	새발전소 시공비, 손실금 보전, 배당금 등
사회적 목적비	시민, 환경단체 기부	1,020,000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재생에너지교육	1,600,000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근로조건개선	1,200,000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배당금	8%	31,248,000	회계연도 기준 총출자금 390,600,000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4,038,917	
합계		65,674,352	

제4호 의안 임원 선거 (의장 : 선거관리위원장)

이사 후보 (가나다순)

1번 김용래 (현 이사)	2번 김종임 (현 이사)	3번 명철수 (현 이사)
인천녹색연합 집행위원 황해교육문화재단 이사 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미추홀교육센터 대표 환경교육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강사	(주)지오알 대표이사 (사)한국해양수산기업협회/ 총무이사 (사)한국해양정책학회/ 이사
4번 박영대 (현 이사)	**5번 박옥희 (현 이사)**	**6번 이성수**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위원회 공동위원장 통합예술나눔터 이사장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위원장	전)인천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전)부평나눔과더함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사)인천주거복지센터 상임이사
7번 이세영(현 부이사장)	**8번 이충현**	**9번 장시정**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공동대표 전)인천광역시기초의제협의회 회장 전)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 간사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획단장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위원장

10번 정세일(현 이사장)	11번 지영일	12번 최정희(현 부이사장)
생명평화포럼 대표 전)코오롱글로벌 상무 전)북경미조유한공사 사장	모두의 거버넌스협동조합 이사장 사단법인 인천교육연구소 이사 전)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용도시분과 위원장 인천공동체만들기 위원회 부위원장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대표
13번 한세현		
한국대기환경학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주)랩솔레미스 대표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감사 후보

회계 감사	사업 감사
이광세 녹색환경연합 중앙회 부회장	한필운 변호사

제5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차입금 최고한도액 포함)

5-1. 2025년 사업계획안

〈2025년 사업 기조〉

- 조합원과 함께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세우기

〈사업 목표〉

- 새 발전소 2개 시공
- 조합원 600명 달성
- 출자금 5억원 달성

(1)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활동

① 조합원과 함께 하는 조합하는 발전소 모니터링 활동

1) 연 2회 모니터링(5월, 11월)

- 주안도서관태양광발전소, 만수여중태양광발전소, 남동경기장시민햇빛발전소

② 새 발전소 2개를 시공을 위한 발전 사업 추진

1)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1개소

- 하반기 인천시 조례 제정 예정, 조례 제정 이후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팀과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와 함께 설치 추진

2) 학교 태양광 발전소 설치 1개소

- 상반기 학교 발굴, 학교 방문 설명, 하반기 인허가절차, 2025년 12월 시공, 2026년 2월 상업발전개시

③ 조합원 600명 달성과 출자금 5억 달성을 위한 조합원 교육 및 홍보 활동

1) 신입 조합원 교육 연 1회 (11월)
2) 기존 조합원 교육 연 1회 (6월)
3) 조합원이 함께하는 햇빛발전 홍보 부스 운영 : 연 4회, 부스 참여해서 인증샷 찍기
4) 조합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홍보 활동 : 개인의 SNS계정을 이용한 홍보
5) 홈페이지 제작 : 캠페이너스 활용

(2) 지역사회공헌 사업

1) 햇빛장학금 지급 : 만수여자중학교, 인천석정초등학교
2) 재생에너지 교육 : 주안도서관 재생에너지 교육
3) 지역 시민 · 환경 단체 후원

(3) 연대 사업

1)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과와 간담회(연2회)
   - 네트워크에서 사무국 활동
   - 네트워크 격월 회의
2)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시민발전협동조합비상행동의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법제화 활동
   - 총회 참여
3)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기획단 월간 회의
   - 9월 기후정의행진

(4)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제정 사업

(5)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참여 및 사업의 다각화

- 인천시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담 기관 지정 : 인천도시공사
-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주민참여형으로 협동조합 참여 논의 예정

5-2. 2025년 예산안

(1) 수입

항목		금액	비고
전력매출	전력	126,720,000	950,000kWh×128원
	REC	105,750,000	1410개×75000원
합계		232,470,000	2024년 대비 41,606,087 감소

(2) 지출

항목		총액	세부항목	비용	비고
발전사업비	원재료 매입비	3,500,000	염전골전력구매비	3,500,000	석정초 전력매출 중 염전골 몫
	발전소 유지 관리	17,570,830	전기안전관리비	9,424,800	785,400×12개월
			인터넷비, 모니터링비	577,680	48,140×2개월
			발전소 전기료	2,068,350	2024년 기준
			발전소 보험료	4,500,000	2024년 기준
			발전소 수리비	1,000,000	2024년 기준
	발전소 부지 연간 임대료	22,057,900	마니산친환경영농조합	1,650,000	
			주안도서관	2,894,100	
			만수여자중학교	3,579,300	
			남동경기장	11,700,000	
			인천석정초등학교	1,834,500	
			김진선시민햇빛발전소	400,000	
	세금 및 공과금	2,218,500	전기사업면허등록세	634,500	67,500×9개, 27,000×1개
			세무대행수수료	1,584,000	132,000×12개월
	감가상각비	73,216,618		73,216,618	실제 지출이 아니며 손익계산서상 지출
	소계	118,563,848	2024년 대비 3,500,230원 증가		
일반사업비	행사비	5,800,000	정기총회	2,800,000	2024년 총회 예산 기준
			준공식	3,000,000	발전소 2개소 준공식 2회
	연대 사업	1,300,000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 연합회	1,000,000	연회비 20만원, 발전회비 80만원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	300,000	회비

	조합 홍보비	860,000	홈페이지 제작	200,000	홈페이지 제작
			홍보 부스 운영	660,000	인건비(2×4×70,000), 재료비 100,000
	조합원 교육비	740,000	신입조합원 교육	370,000	2024년 기준
			기존조합원 교육	370,000	2024년 기준
	소계	8,700,000			
운영비	직원 급여	24,000,000	사무국장	24,000,000	2,000,000×12개월
	이사장 활동비	3,600,000	이사장 활동비	3,600,000	300,000×12개월
	복리 후생비	3,000,000	임원, 대의원, 직원 선물 및 이사회, 조합원 모임 회식비 등	3,000,000	
	사무실 사용료	2,906,340	사무실 연간 사용료	2,546,340	
			사무실 관리비	360,000	30,000×12개월
	여비 교통비	2,440,000	이사회 교통비	2,340,000	30,000×13명×6회
			주차비, 출장비	100,000	
	업무 추진비	400,000	업무협의 비용 등	400,000	
	통신비 및 운반비	1,317,430	조합원 문자 안내	1,000,000	
			사무실 전화료	234,110	
			지출결의서 배송비 등	83,320	
	지급 수수료	1,740,000	세무회계대행비	1,440,000	120,000×12개월
			각종 증명서, 인증서 발급비 등	300,000	
	소모품비	100,000	문구류, 서류정리철, 우편봉투비 등등	100,000	
	대출 이자	34,119,667		34,119,667	
	예비비	10,000,000	예비비	10,000,000	총 예산의 약 10%
	소계	83,623,437	2024년 대비 (일반사업비 + 운영비+이자비용 = 판매관리비) 1,966,542 증가		
지출 총계		210,887,285			
이익잉여금		21,582,715			

5-3. 차입금 최고한도액(안)

- 2025년 차입금 최고한도액을 10억원으로 한다.

9. 퇴임 임원 감사패 전달

1. 이사장 정세일

귀하께서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지난 6년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열정과 노고에 조합원들은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꿈꾸었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하나가 되었던 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인연 또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 이사 서일석

귀하께서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오랜 시간 나누어 주셨습니다. 초대 이사장과 이사로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애쓰신 그 열정과 노고에 조합원들은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 또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3. 이사 심형진

귀하께서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오랜 시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모든 조합원과 함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사님과의 인연 또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4. 이사 이완기

귀하께서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오랜 시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모든 조합원과 함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사님과의 인연 또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5. 감사 조현행

귀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한 감사로 조합이 발전과 성장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노고에 조합원들은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이 꿈꾸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님과 그동안 맺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10. 폐회 선언

11. 사진 촬영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가능한 빨리 탄소중립사회로 가야합니다.
더 이상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정관

2022. 3. 21. 일부 개정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목 차

Ⅰ.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

Ⅱ. 정관

Ⅲ. 규약편

1. 총회운영규약
2. 대의원선출규약
3. 임원선거규약
4. 위원회설치 운영 규약
5. 출자좌수감소규약
6. 조합경비규약
7. 잉여금배당규약
8. 과태금규약
9. 현물출자규약
10. 직원규약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초로 한다. 각 설립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의 원칙

제1원칙 : 자발적 공개적 조합원 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ip)
제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Democratic Member Control)
제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제4원칙 :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제5원칙 : 교육, 훈련 및 홍보(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제6원칙 : 협동조합 간 협동(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제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Concern for Community)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정 관 (2013. 1. 18. 제정)

(2020. 3. 24. 일부 개정)

(2022. 3. 21.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5장 임원과 직원

제6장 사업과 집행

제7장 회계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조·자기책임·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확대·에너지소비감축 사업·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기후·환경·생태계 보전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1.>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 2022. 3. 21.>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22. 3. 21.>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조합원은 매년 1구좌 이상의 출자금을 증자 할 수 있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제2항의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인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2022. 3. 21.>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 · 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 · 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개정 2022. 3. 21.>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신설 2022. 3. 21.>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의1(운영위원회) ①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0조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3. 21.]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2. 3. 21.>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3. 24.>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21.>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제4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3. 2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3. 21.>

2. 삭제 <2022. 3. 21.>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4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2. 3. 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4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21.>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4.>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햇빛발전소와 각종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및 유지 관리

2. 조합원 및 시민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4.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5의2.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신설 2022. 3. 21.>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0. 기타 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인천광역시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1.>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공헌 목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회공헌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2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뺀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③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제61조의 법정적립금 적립, 제62조의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적립 등을 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2. 3. 21.>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계연도에 가입한 조합원의 배당금은 출자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제6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개정 2022. 3. 21.>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개정 2022. 3. 21.>

부칙

이 정관은 인천광역시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규 약 편

1. 총회운영규약
2. 대의원선출규약
3. 임원선거규약
4. 위원회 설치 운영 규약
5. 출자좌수감소규약
6. 조합경비규약
7. 잉여금배당규약
8. 과태금규약
9. 현물출자규약
10. 직원규약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1. 총 회 운 영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혹은 전국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초일 불 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총회의 의사) 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해임,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4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9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 촉할 수 있다.

제11조(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2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표결 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4조(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5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 수 및 참석 조합원 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2. 대 의 원 선 출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별(또는 지역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2.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3. 임 원 선 거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⑤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등록) 임원후보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여야 한다.

제11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 심사가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2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정관 제 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5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조합의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후보가 다수일 때에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은 제15조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8조(당선인의 결정) 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선거인의 신임여부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단독 입후보의 경우,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2인 이상 입후보한 경우, 1차 투표로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이상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2차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2차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상위 득표자 2인을 후보로 하여,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이상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⑦ 최종 결선투표는 2차 결선투표자를 후보로 하여,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최다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9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0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4. 위원회 설치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40조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조합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위원회의 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이사에 준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상설위원회)조합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위원회 및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제7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이후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5. 출 자 좌 수 감 소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5구좌를 넘을 경우 5구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이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금을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③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 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5구좌 이하일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도 남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

3. 정관 제15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 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 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6. 조 합 경 비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합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징수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조합비의 정의) ① 행사비는 조합이 개최하는 행사에 조합원이 참여할 때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행사 참석자(조합원 및 그 가족과 지인 포함)에 한해 납부한다. 다만, 행사진행을 위한 공통비용의 경우 불참자에게 일부의 경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항의 행사비 책정 시 중학생 이상은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하며, 초등학생은 50% 감액하고, 미취학아동은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7. 잉 여 금 배 당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본 조합의 정관 제64조 3항에 의거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 연도 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배당 가능 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이월 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전

2. 법정적립금 적립금액

3.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4. 총회에서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제5조(조합원별 배당금 산정 기준 및 계산) ① 정관 제64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별 배당금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과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2. 3. 21.>

② 이사회는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정하고 이를 제외하고 남은 전체 배당액을 가지고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원별 이용실적 배당금을 계산한다. <신설 2022. 3. 21.>

③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기준에는 조합원참여기간·교육또는위원회참여횟수·조합홍보또는신규조합원가입·자가소비형태양광설치및홍보·햇빛발전소부지제안·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감축·조합사업제안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3. 21.>

④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기준은 매 회계연도 3월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신설 2022. 3. 21.>

⑤ 회계연도에 납입된 출자액에 대한 현금배당액은 납일일을 기준으로 일수 계산한다. <신설 2022. 3. 21.>

제6조(잉여금 배당) ① 제5조에 의거 산정된 배당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당한다.

1. 자본배당 : 배당금을 자본금(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자본금에 대한 지분으로 배당한다.

2. 현금배당 : 현금을 직접 배당한다.

3. 현물배당 : 조합이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배당한다.

② 배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의 결의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배당하고 그 절차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배당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자본배당, 현물배당, 현금배당의 순으로 고려한다.

제7조(배당금의 상계)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8. 과 태 금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2조 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 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경우에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최종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과태금을 부과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서면은 조합원이 최종 납입기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과태금의 유예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과태금이 부과된 경우

2.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경우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9. 현 물 출 자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 제6항에 의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 정부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10. 직 원 규 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54조 제2항에 의거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합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조합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직원의 의무) 조합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의 인사) 조합직원의 임용·임면·승진·휴직·표창·징계 등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직원의 복무) 조합직원의 근무시간·휴가·안전과 보건 등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의 급여) 조합은 직원의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 등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기타 직원에 관한 사항) 이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